1	자체 예산집행지침 수립 미흡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기획혁신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 자체 예산집행 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예산편성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로 갈음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기획혁신실에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2	선임직 임원 임기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기획혁신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 이사회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나,

- 「정관」 제8조에 선임직 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에 대해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를 마친 후 2년 중임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 공공기관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은 1년 단위로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임직 임원에 대한 연임 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철저한 관리 요구 **(개선)**

3	**도 본부 직제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기획혁신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직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기능·인력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 2022년 12월 '경영·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도 본부별 적정행정인력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협의에 따라 도 본부 행정인력을 업무량, 관리 인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도 본부를 7명(방역·위생 4, 사무운영 3)으로 운영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경영·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라 도 본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제 개선 방안 마련 요구 **(통보)**

4	**도본부협의회 운영 실효성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기획혁신실

○ 도의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업무 협의·지원 등을 위해 「도본부

협의회 운영준칙」에서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 농식품부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와 그 기능 및 위원구성이 중복됨에 따라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도본부가 2개소, 2023년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도본부가 전체 9개소 중 6개소에 달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가 도본부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고 위원구성도 서로 중복되는 점을 감안, 「도본부협의회 운영준칙」의 존치 필요(실효)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폐지, 정비 등 조치 요구 **(통보)**

5	**제한경쟁채용 주무기관 사전협의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인사업무처리준칙」,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 채용 시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공문 등을 통한 공식 절차를 통해 협의·진행하여야 하나,

- 최근 3년간 7회에 걸쳐 제한경쟁방식으로 정규직 264명을 채용하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문이 아닌 메일이나 대면방식의 협의를 통해 진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에게 공문 등을 통한 공식 절차를 통해 협의 진행 요구 **(통보)**

6	직무관련 수당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개선	관계기관	경영지원실

○ 「급여규정(호봉제)」 및 「연봉제시행준칙」에 따라 지급하는 위험업무수당과 청결유지비는 유사입법례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감안하여 위험하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직원에게만 각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2020년 12월 8일 도본부의 현장업무 지원 건수 증가를 사유로 일시적·간헐적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본부 및 도본부의 행정인력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 특수업무수당의 경우는 유사입법례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호봉제는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당해 업무분야에 종사하여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연봉제는 자격·면허증만 소지하여도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급여규정(호봉제)」 과 「연봉제시행준칙」에서 정한 수당의 규정과 맞지 않게 위험근무수당, 청결유지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경영지원실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② 위험근무수당과 청결유지비의 경우 지급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취지 및 특성에 맞게 규정 정비 요구 **(개선)**

7	불용자산 폐기 등 고정자산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실

○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따라 불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증여, 폐기 등 처분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불용품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불용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컴퓨터 275대를 불용자산으로 결정한 후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매각의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명시하였는데도 9개 도 본부에서는 매각 등 처분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폐기 처분하였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불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증여, 폐기 등 처분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불용품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8	기자재 구매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각 사업별 연간 기자재 구입 및 공급계획에서 공통 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일괄 구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나,

- 안전장갑, 안전화 등 공통사용이 가능하여 일괄 구매가 가능한 기자재에

대해 각 사업별로 구입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괄 구입시 경쟁입찰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간 기자재 구입 및 공급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여 공통 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일괄 구입하는 등 효율적인 기자재 구입 방안 검토 요구 **(통보)**

9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실, 정보사업부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임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 '2023～2025년 팜스·전화예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당해 회계연도가 아닌 1년기간(2023.9.～2024.9.)으로 계약하고,

- 2021～2025기간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후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계약종료일 이후(자동 연장계약 기간)에 추진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임업체 선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후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계약종료일 이후에 추진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②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통보)**

10	**초동방역팀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방역사업부

○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 매년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대응 해야 하나,

- 2022년 이후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2023년 및 2024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전년도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등 초동방역팀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 초동방역팀은 권역별로 2명 이상을 기본으로 시·군별로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나,

- 2023년 초동방역팀을 구성하면서 2개 도 본부, 3개 사무소에서 담당 지역보다 방역직 직원이 많은데도 특정 직원을 지역별로 중복되는 등 초동방역팀을 중복으로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미흡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동방역팀을 권역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권역별, 시·군별로 직원이 중복되지 않는 등 적정하게 초동방역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1	**산란계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사업 운영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방역사업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함

○ 농식품부 고시인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중 “관리기관(지자체) 공무원 1인” 사항이 제외되도록 개정(2022.10.28.) 되었는데도,

- 자체 「산란계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 사업지침」의 평가사 인원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침 개정 없이 방역본부 평가사 1~2인으로 방역기준 유형 부여 평가를 하고 있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 내용에 맞게 「산란계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사업지침」을 정비하되, 산란계농장 유형부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 요구 **(개선)**

12	**경영평가지표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위생검역부

○ 도축검사 경영평가지표인 ‘이상(폐기)보고 정확도 제고율*’은 의심 식육에 대해 검사관에게 적극 보고하여 부적정한 식육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고,

- 검사항목에 따라 일부 건수가 아닌 중량(kg)단위로 입력함에도 일괄 건수로 하여 평가지표 달성도를 산출함

  * 검사관 폐기건수 / 검사원 이상(폐기) 보고 건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평가지표 중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 정확도 제고율'은 지표로서 부적정하므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는 등 조치 요구 **(통보)**

13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강원도본부

○ "2023~2024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계획"에 따라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은 초동방역팀 투입부터 방역대 해제 시까지로 하되, 평일은 09:00~19:00, 휴일은 09:00~18:00까지 운영하여야 하나,

- 2023.7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회에 걸쳐 발생하였는데도,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을 방역대 해제 시까지 운영하지 않고 초동방역팀 철수 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근무(평일 1시간 대기, 휴일 착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되지 않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특별방역대책기간 또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질병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당직근무를 가축질병 상황실로 전환하고 상황실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4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체계 마련을 통한 사전예방 기여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안전관리부

○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감염병 검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방역본부가 시도 보건기관(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신규직원 채용 시 인수공통감염병(브루셀라, 큐열)의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직원 업무 시작 전 감염병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 기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수공통감염병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직 직원들의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 추천 요구 **[통보(모범사례)]**